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5호

「강릉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0일

강 룽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조례안 예고

1. 제정이유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산업의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이스포츠 발전과 활동을 촉진하기위한 설치·운영(안 제5조)
- 마. 포상(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
 - 주 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 - 전화번호: 033-640-4077
 - 팩스번호: 033-640-4070
 - 전자우편(이메일): hellen8762@korea.kr

붙임 강릉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조례안 1부. 끝.

강릉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이스포츠를 통하여 강릉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- 제3조(책무) 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이스포츠 진흥사업)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
 - 2. 이스포츠 관련 홍보·마케팅
 - 2.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
 - 3.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
 - 4.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
 - 5.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
 - 6.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

-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- 제5조(이스포츠시설)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,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이스포츠 대회 개최
 - 2.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
 - 3.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
 - 4.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
 -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수 있다.
- 제6조(포상)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·기 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「강릉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이스포츠"란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(媒介)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.
- 2. "전문 이스포츠" 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.
- 3. "생활 이스포츠" 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.
- 4. "이스포츠산업"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5. "이스포츠시설"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,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
- 6. "이스포츠 선수" 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7. "이스포츠 단체" 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 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·장기 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 -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
 - 2.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법규명:					
○ 성명(단체명) :					
○ 주		소 :			
○ 연	락	처 :			

제・개정안 내용	의	견	비고